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따라,
- 서울특별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시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그와 같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.
-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발생시 그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다음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시 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.
- 또한 민간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